

2022년 소방공무원(소방장·교) 승진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2년 소방공무원(소방장·교) 승진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3일

충청북도지사

I. 시험개요

1 시험일정

원서접수	필기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7. 18.(월) ~ 7. 21.(목)	9. 3.(토)	9. 21.(수)
119고시 누리집 (http://119gosi.kr)	8.24.(수) 별도 공지	119고시·소방청 누리집

※ 상기 시험일정은 내·외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7일 전 공고)

2 승진예정인원

승진계급	예정인원(명)
소방장	21
소방교	31

3 응시자격

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0조를 충족한 사람

※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기준일: '22. 8. 31.(시행규칙 제3조)

나. 기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관련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것

II. 원서접수 등

1 원서접수 (원서접수는 119고시에서만 가능)

- 가. 대상자: 소방장·교 승진시험 응시자
나. 접수기간: 7. 18.(월) 10:00 ~ 7. 21.(목) 18:00
※ 접수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 접수취소는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
다. 접수방법: 119고시 누리집(<http://119gosi.kr>)
라. 접수확인: 119고시 로그인 → 마이페이지(소속, 이름, 임용일자 등)

원서접수 유의사항

- 사진기준: 반명함(3cm×4cm), 사진 파일(JPG, GIF, PNG, DMP), 해상도(100DPI 이상)
- 사진등록: 응시자 본인을 특정할 수 없는 사진* 등록 시 불이익 발생
 - *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온 사진, 동물·식물 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등을 사용할 수 없음
- 응시자 개인정보 불일치(하위 작성, 오기, 누락), 연락 불능, 시험승진 응시자격 미충족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시험실시권자는 잘못된 정보를 입력한 응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원서접수 기간 시스템오류 문의 콜센터: SE코리아, 070-4290-9611

2 원서접수 결과 공개 및 응시번호 부여

- 가. 원서접수 결과 공개
- 1) 일자: 7. 25.(월) 14:00
 - 2) 내용: 지역별, 계급별 접수 현황
 - 3) 공개방법: 소방청에서 시도에 공문 발송 또는 119고시 공고
 - 4) 공개대상: 소방장·교 승진시험 대상자
- 나. 응시번호 부여
- 1) 부여일시: 8. 5.(금)까지 / 119고시
 - 2) 부여방법: 동일 소방기관 소속 응시자가 서로 연속되지 않도록 혼합
 - 3) 번호공개: 응시표 교부 전까지 비공개 처리
 - 4) 부여방법: 8자리(1122 시도·성별·계급 – 1234 순번)

3 응시표 발급(출력)

- 가. 발급일자: 8. 24.(수) 14:00부터
- 나. 발급방법: 응시자가 119고시에 접속하여 직접 출력
- 다. 발급절차: 119고시 접속 → 마이페이지 → 응시표 출력
- 라. 확인방법: 시험 당일 시험감독관이 응시표 사진과 응시자 대면 확인
※ 승진시험 응시자는 필기시험 당일 반드시 응시표를 소지할 것

III. 필기시험

1 필기시험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 가능)

- 가. 시험일시: 9. 3.(토) 10:00 ~ 11:15(75분) ※ 09:30분까지 입실 완료
- 나. 시험장소: 8. 24.(수) 별도 공고(본부 및 도 누리집)
- 다. 시험방법: 제1차 시험(선택형 필기시험)
- 라. 시험운영: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 가능
- 마. 문제구성: 과목당 25문제 / 단일 책형 / 객관식(4지 1선택형)

구분	과목 수	문항 수	시험과목		
소방장	3	75	소방법령Ⅱ	소방법령Ⅲ	소방전술
소방교	3	75	소방법령Ⅰ	소방법령Ⅱ	소방전술

1. 소방법령 I: 소방공무원법(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공무원보수규정,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징계령, 소방공무원 기장령

2. 소방법령Ⅱ: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 소방법령Ⅲ: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4. 소방전술: 화재·구조·구급·소방차량 정비실무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지식·기술 및 기법 등
- ※ 소방법령 문제는 필기시험일(2022.9.3.) 현재 시행 중인 법령에서 출제

- 바. 준비물: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 소방공무원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기간만료 전), 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

2 문제문의 운영(소방청 주관)

가. 기간: 9. 3.(토) 16:00 ~ 9. 4.(일) 24:00

나. 방법: 119고시 누리집에서 신청

다. 자격요건: 승진시험 응시자만 가능

라. 내용: 출제문제 오류, 복수정답, 정답없음 등 문의

마. 절차: 로그인 → 질의응답 → 필기시험 문제 → 문의서 첨부

※ 응시자는 승진시험 필기시험문제 문의서 작성 첨부(전화 문의는 받지 않음)

3 최종 합격자 공고

가. 일시/대상: 9. 21.(수) 14:00

나. 공고방법: 소방청 및 119고시 누리집 게시

다. 공고내용: 최종합격자 명단, 출제문제 문의결과 공고

■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4조

- 합격기준: 필기시험은 매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 최종합격자: 필기시험 성적(60%)와 당해 계급에서의 최근에 작성된 승진대상자 명부의 총평정점(40%)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 순위*에 의해 결정
 -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동점자 순위 결정
 - ① 최근에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총평정점이 높은 사람
 - ②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 ③ 해당 계급의 바로 하위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 ④ 소방공무원으로 장기근무한 사람

■ 불합격자 필기시험 점수 공개

- 공개기간: 9. 22(목) 16:00 ~ 9. 23(금) 18:00
- 공개대상: 소방위·장·교
- 문의기관: 소방위(소방청), 소방장·교(시도)
- 공개방법: 119고시(접속 → 성적조회→ 본인인증 → 응시번호)

VI. 기타 안내사항

1 일반사항

가.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신분증 인정 등 유의사항

- ▶ 인정: 소방공무원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 ▶ 불인정: 자격수첩, 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 신분증 사진
※ 응시표 출력 후 모든 시험절차에 지참하여야 합니다.

나. 응시자는 본인이 소속한 시도 소방본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 시험장에서는 응시가 불가합니다.

다. 응시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시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하며(이후 입장 불가), 공고된 시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응시 포기로 간주합니다.

시험장 폐쇄 시간 기준(예시)

- ▶ 시간 기준: 10:00 시험은 08:30에 개방하여 09:30:00까지 입장 가능
09:30:01부터 시험실시 건물 주 출입구 폐쇄
- ▶ 입구 기준: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한 출입구 기준
※ 시험장 개방시간은 필기시험 장소 공고문 참고(시도별 상이)

라. 시험공고의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119고시 및 시도 소방본부 누리집에 공고합니다. 공고내용 및 공지사항(시험일시, 장소 등)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정부 방침에 따라 시험 일정이 긴급하게 변경될 수 있음

마. 모든 시험은 우천, 폭설, 강풍 등에도 예정대로 시행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시험장소 등을 공지합니다.

바. 응시자는 시험장 물품 등 파손,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소지품 분실 등 시험장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사. 응시자격 요건이 적합하지 않은 응시자의 시험결과는 무효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책상, 벽 등에 필기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답안지 작성 및 부정행위 등 안내

- 가.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시험장소 및 시험실)에 착석하여 감독관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시험장 유의사항

- ▶ 응시자는 시험장의 위치, 교통편, 이동 소요 시간 등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험 전날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 시험장은 정문만 개방하고 출입 통제는 시험실시 건물 주 출입구 통과시간 기준입니다.
 - ▶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출입이 불가합니다.

- 나. 원서접수 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자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원의 개명판결문을 지참하여 필기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다. 개인별 성적은 답안지 전산 판독 결과에 따르며, 답안지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 하므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 라. 답안은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때는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1) 표기한 답안을 수정할 때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 주어야 합니다.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2)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 또는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발생하는 판독 결과 등에 대한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채점오류(귀책 사유) 사례

- ▶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
 - ▶ 번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
 - ▶ 답안지 여백 낙서, 훠손 등으로 채점 불가한 경우
 - ▶ 예비표기 하여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
 - ▶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이외 필기구(연필, 샤프, 적색펜 등) 사용한 경우
 - ▶ 불량 또는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사용으로 마킹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 ▶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 ■ ■ ■ ■)를 훠손한 경우
 - ▶ 수정테이프 사용 후 번점, 뜯김 등이 발생한 경우

<보기> 올바른 표기 : ● 잘못된 표기 : ○ × ◎ ● ● ● ● ● ● ● ● ●

- 마. 답안지는 본인의 응시표를 확인 후 직접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필적감정용 기재) 예시문과 동일한 내용을 본인의 필적으로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2) (자필성명) 본인의 한글 성명을 정자로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불이익(당해시험 무효 처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교체답안지 작성) 답안지를 교체하면 반드시 필적감정용 기재란, 자필성명, 응시번호, 생년월일 등을 빠짐없이 작성(표기)해야 하며 작성한 답안지는 1인 1매만 유효합니다.
- 바.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 모든 통신기기나 전자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문제지 배부 후 발견 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1) 휴대용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펜, 카메라 안경,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무선호출기, 이어폰, PDA, 스마트 워치, 전자계산기, 전산기기, 테블릿 PC 등
 - 2) 통신장비를 소지한 응시자는 시험실시 전 전원을 끈(off) 후 시험실 전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문제지 배부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사. 문제지 배부 후 시험 시작 전에 문제지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응시자는 문제지의 과목순서대로 답안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때도 답안지에 기재된 과목순서대로 채점이 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차.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를 마시는 것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하게 시험을 중단할 때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카.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승진시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답안지에 성명, 생년월일, 응시번호, 시험감독관 서명, 필적 감정용 기재란을 기재하지 않아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무효답안으로 처리합니다.

유사답안처리 및 무효답안처리 기준

- ▶ 부정행위자 조치: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 준용
- ▶ 유사답안의 처리: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제23조 적용
- ▶ 무효답안처리: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제24조 적용
- ▶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준

■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무효답안처리 기준(제24조제5항)

- 시험지(문제지, 답안지)가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 간에 대화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 간에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타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행위
-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파.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시험 운영을 위하여 응시자(본인)의 확진 및 자가격리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 코로나19 감염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별도 시험장 운영 안내】

1. (대상) 승진시험 응시자 중 아래 사항의 하나 이상 해당하며 신청방법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한 사람

- ① 코로나19 확진 또는 자가격리자^{*}로 시험일까지 격리 중인 응시자
 - * 자가격리자: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시설 내 접촉자
- ②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양성이고, 시험일까지 코로나19 PCR 검사(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응시자

2. (신청기간) 2022. 9. 2.(금) 18:00까지 응시 신청서가 도착하지 않으면 응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3. (신청방법)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유선통보(043-220-4822) 및 e-메일 제출(happysuki@korea.kr)

4. (제출서류)

- ① (공통) 코로나19 별도시험 응시 신청서【서식 3】
-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서식 4】
- ③ (병원입원·생활치료센터 입소 확진자) 시험 응시 가능 의사소견서

구 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확진(재택치료)	①, ②	1. 본인 해당되는 서류 미제출시 별도시험 접수 미인정 2. 시설 내 응시는 시험운영본부 사정으로 제한될 수 있음
확진(병원·생활치료)	①, ②, ③	
자가격리자	①, ②	

※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양성이고, 시험일까지 코로나19 PCR 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응시자는 ①, ② 서류 제출

5. (시험안내) 시험응시 신청자에게 개별 유선 통보

6. (유의사항) 확진 및 자가격리자 방역지침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하위 검사서류를 제출한 응시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불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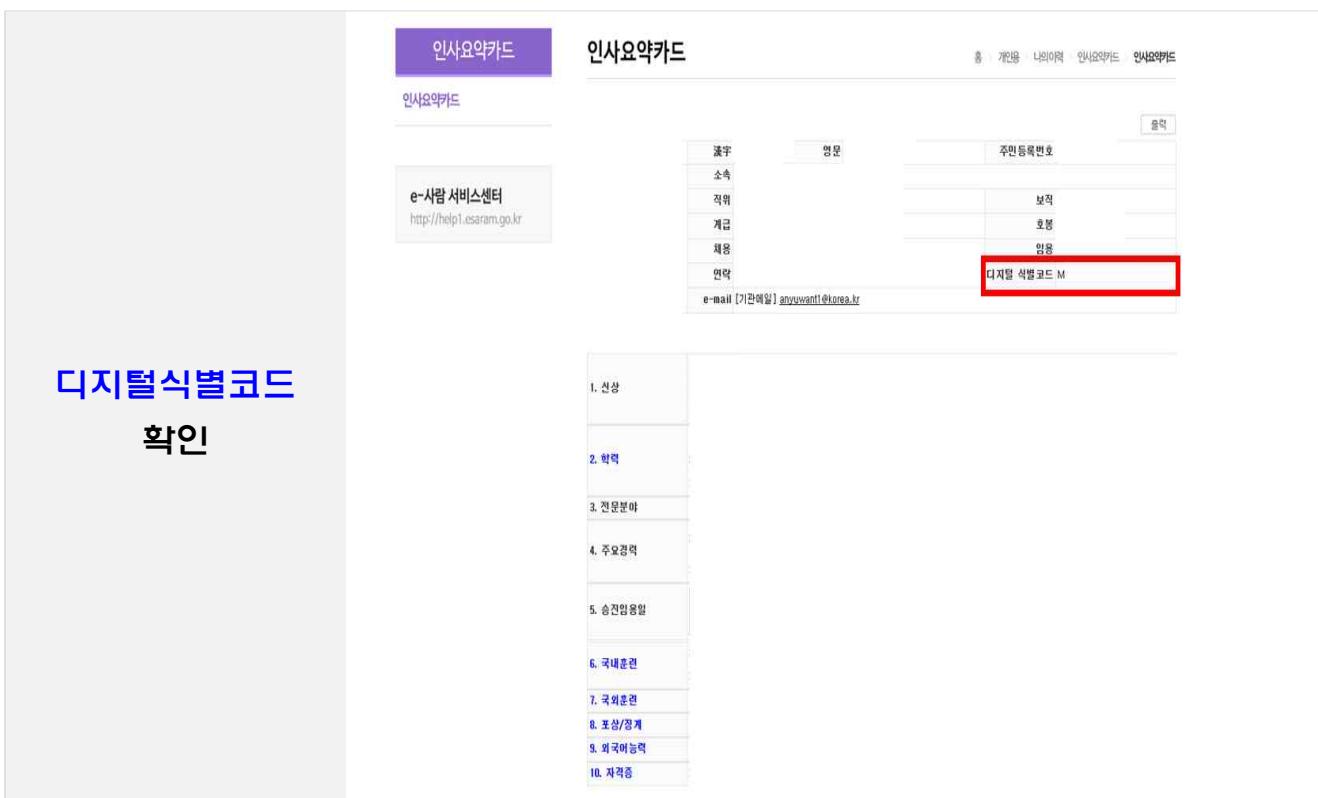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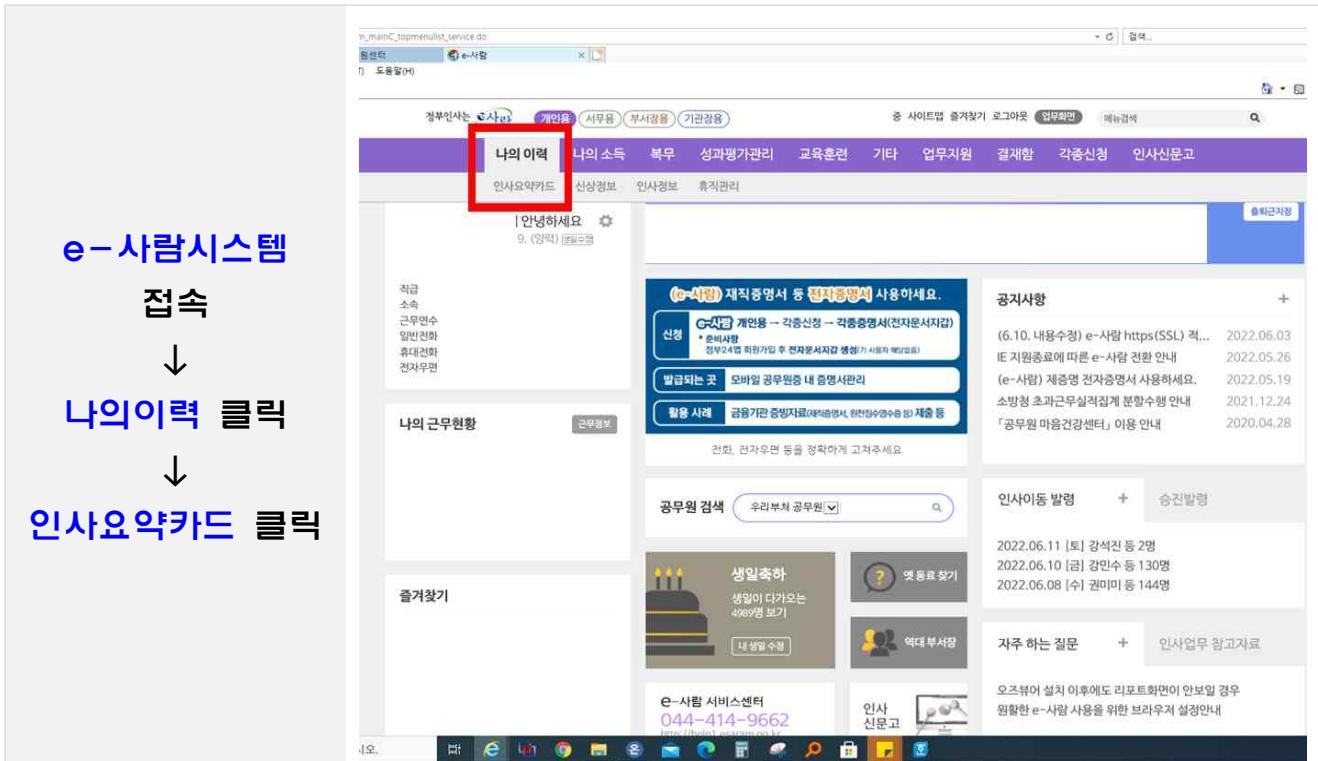
소방전술 출제범위 (승진시험 시행요강 - 별표 1)

분야	출제범위	비고
화재 분야	- 화재의 의의 및 성상	
	- 화재진압의 의의	
	- 단계별 화재진압활동 및 지휘이론	
	- 화재진압 전술	
	- 소방용수 총론 및 시설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등	
	- 재난현장 표준작전 절차(화재분야)	소방장 및 소방교 제외
	- 안전관리의 기본	
	- 소방활동 안전관리	
	- 재해의 원인, 예방 및 조사	
구조 분야	- 안전 교육	
	- 소화약제 및 연소.폭발이론	소방교 제외
	- 위험물성상 및 진압이론	소방교 제외
	- 화재조사실무(관계법령 포함)	
	- 구조개론	
	- 구조활동의 전개요령	
	- 군중통제, 구조장비개론, 구조장비 조작	
	- 기본구조훈련(로프, 확보, 하강, 등반, 도하 등)	
	- 응용구조훈련	
	- 일반(전문) 구조활동(기술)	
구급 분야	- 재난현장 표준작전 절차(구조분야)	소방장 및 소방교 제외
	- 안전관리의 기본 및 현장활동 안전관리	
	- 119구조구급에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소방장 및 소방교 제외
	- 응급의료 개론	
소방차량 정비실무	- 응급의학 총론	
	- 응급의료장비 운영	
	- 심폐정지, 순환부전, 의식장애, 출혈, 일반외상, 두부 및 경추손상, 기도.소화관이물, 대상이상, 체온이상, 감염증, 면역부전, 급성복통, 화학손상, 산부인과질환, 신생아질환, 정신장애, 창상	소방교 제외
	- 소방자동차 일반	
	- 소방자동차 점검.정비	
	- 소방자동차 구조 및 원리	
	- 고가·굴절 사다리차	

※ 소방전술 세부범위는 시험일 기준 당해연도 중앙소방학교에서 발행하는 신임교육 과정 공통교재로 한다.

불임 2 응시자 디지털 식별코드 확인 방법

□ e-사람 시스템 접속 → 나의이력 → 인사요약카드 → 코드확인



【서식 1】

필기시험 문제문의서

문제문의	성명		응시번호	
연락처	휴대전화			
	전자우편			
응시분야	응시시도			
	응시분야			
문의과목	해당과목			
	문항번호	번		

<출제문제>

<사유 및 관련근거> - 사유 및 관련근거 반드시 기재

<응시자 의견>

【서식 2】

응시원서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1. 접수자 인적사항

시 험 명		응 시 계 급	
성 명		응 시 번 호	
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2. 정정 신청 내용

구 분	정정 전	정정 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3. 정정 사유

4. 첨부: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 전후 사실이 확인 가능할 것)

2022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서식 3】

코로나19 별도시험 응시 신청서

□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	- -	응시번호	
현주소지			
격리기간		관할보건소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신청사유			

□ 제출 서류

※ 서류 제출현황 (제출시 □에 'V' 체크)

- ① 코로나19 별도시험 응시 신청서 □ (공통)
- ②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공통)
- ③ 의사 소견서(병원입원·생활치료센터 입소 확진자) □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확진(재택치료)	①, ②	
확진(병원·생활치료)	①, ②, ③	1. 본인 해당되는 서류 미제출시 별도시험 접수 미인정 2. 시설 내 응시는 시험운영본부 사정으로 제한될 수 있음
자가격리	①, ②	

※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양성이고, 시험일까지 코로나19 PCR 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응시자는 ①, ② 서류 제출

※ 제출서류는 방역당국 지침 및 시험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상기 본인은 2022년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응시를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서식 4】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서(별도 시험용)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자 등의 시험응시 여부 확인을 위하여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활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휴대전화, 주소,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 기본 개인정보 수집·활용

수집하는 교유식별정보 항목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활용

수집하는 교유식별정보 항목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질병관리청, 관할 보건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응시자 확진·자가격리 여부 확인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기본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활용 등의 여부 동의 □ 미동의 □

■ 개인정보 취급자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이메일	개인정보보호책임자

10 월 2023

성명 (서명 또는 인)

00000 귀하